

# 신 청 공 고

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0-091호

「방송법」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, 제56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2021~20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. 8. 10.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## 1. 신청자격

-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
  -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방송채널사용사업자
- ※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「방송법」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불가

## 2. 신청서 제출

- 신청서 제출기한 : 2020. 10. 5. (월) 18:00

- 제출 서류 : 신청공문, 신청서(서약서 포함),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, 운영실적 및 계획서, 부속서류, 이행조건 이행결과(기 선정 사업자 한정)
- 제출처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 
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(13809)
- 제출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
  - ※ 공고기간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
### 3. 작성방법

- ‘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’ 및 고시 설명 자료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
  - ※ [붙임]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설명 자료

### 4. 제출요령

- 신청공문, 신청서(서약서 포함), 신청법인에 관한 사항, 운영실적 및 계획서를 합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고, 부속서류와 이행조건 이행결과 서류도 편철하여 책자형태의 1책으로 하여 제출
  - 아울러, 각 책자는 간지 등으로 각 내용을 구분하고 쪽수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

구분	편철서류	구분	편철서류
1권	신청공문	2권	부속서류
	신청서(서약서 포함)		이행조건 이행결과
	신청법인에 관한 사항		-
	운영실적 및 계획서		-

- 1권과 2권의 원본은 따로 불투명한 봉투에 봉인하고, 이에 대한 사본 10부를 일괄 포장하여 봉인 및 제출
  - 휴대용 저장 매체의 경우도 포장하여 1별만 봉인하여 제출

- 봉인된 서류 및 휴대용 저장매체의 겉면에는 각각의 내용물에 대한 목록을 표기하여 운반이 용이한 파일박스(종이박스 가능)에 넣어 제출

## 5. 신청서 보정

- 신청서 보정기한 : 2020. 10. 29 (목) 18:00
  - ※ 신청서를 접수한 사업자에 한함
- 신청서를 보정한 경우 이에 대한 공문과 아래 양식을 작성하고, 보정된 내용에 대한 원본 1부, 사본 각 10부 및 원본의 내용을 저장한 휴대용 저장매체 1벌을 기한 내에 재제출

구 분	기 존		보 정	
	페이지	내용	페이지	내용
(서류명)				

## 6. 향후 일정

- 고시 설명회 : 8. 14(금) 15:00 /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위원회 4층 대강당
  - ※ 설명회 개최일정은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 - ※ 신청서 작성요령 설명 병행 / 설명회 당일에는 설명 자료를 배부하지 않으니 사전에 붙임 파일을 출력하여 참석 바람
- '21~'22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심사 : 12월 중

## 7. 기타사항

-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보충서류 등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할 수 있으며,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- 제출된 서류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여 공개될 수 있음
-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
- 문의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(02-2110-1433, 1434)